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8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강명구·배준영·성일종

박덕흠 • 이헌승 • 주호영

서명옥 • 박수민 • 조경태

김기웅 · 김성원 · 조배숙

임종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증거 채취를 위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범죄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 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 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2(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의 특례)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 1.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3. 14세 이상의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 4.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성 <신 설>	제40조의2(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검사의 특례) 수사기 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의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14세 이상의 피해아동·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